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1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박 석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
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
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
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창진,
민병주, 박상혁, 박영한,
박춘선, 박칠성, 박환희,
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
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
유만희, 유정인, 윤영희,
윤종복, 이봉준, 이성배,
이종배, 이종태, 이효원,
장태용, 최민규, 최진혁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41명)

1. 제안이유

- 도시숲 등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보건과 휴양 증진에 기여하고,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,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숲 등을 조성·관리하도록 함.
-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숲지원센터 사업 수행 범위에 '도시숲 등의 측정·평가'를 추가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(안 제5조).
- 나. 도시숲지원센터 수행사업 중 '관리지표 운영'과 '도시숲 등 측정·평가'를 분리 및 신설함(안 제29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보건·휴양 증진에 기여하고,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,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·증진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성·관리심의위원회”를 “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29조제1호 중 “관리지표 측정·평가와”를 “관리지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도시숲등 측정·평가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시장의 책무)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13조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 위원회)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<u>조성·관리심의 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29조(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 등)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	<p>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보건·휴양 증진에 기여하고,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,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·증진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3조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 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9조(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1.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·평가
와 운영

<신 설>

2. ~ 6. (생 략)

1. ----- 관리지표 -----

2. 도시숲등 측정·평가

3. ~ 7. (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
지와 같음)